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2005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피고A(개명 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채지연, 이용호, 김예리

변론 종결2022. 4. 14.

판결 선고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8.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202,134,6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34,6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C(개명 전: D)는 2012. 10. 15. 대구 중구 E에서 'F'(이하 '대구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2016. 4. 1. 경남 창원시 성산구 G, H호에서 'I'(이하 '창원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각 개업하여 영업해온 사람이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부분은 맨 처음에만 표시하고 이후에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별지 신용보증약정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별지 신용보증약정을 순번에 따라 '순번 1 신용보증약정' 등으로 칭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단서 생략)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13. 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와 관련한 담보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채무 이행 및 통지)

-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 3) C는 J은행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J은행으로부터 합계 410,000,000원(= 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10,000,000원 + 순번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000,000원 + 순번 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와 C의 이혼 및 재산분할협의

- 1) 피고와 C는 2008. 1.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딸인 K(L생)를 두고 있었다. 피고는 2020. 3. 26. 대구가정법원에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여 2020. 6. 8. 대구가정법원 2020년136호로 피고와 C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혼 조정 및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1. 피고와 C는 이혼한다.

2. 피고와 C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가. C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0. 6. 8.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다. 그 외 현재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K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C는 피고에게 K의 양육비로 2020. 8.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6. 피고와 C는 추후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C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제4조의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창원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별지 2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2020. 7. 9.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폐업 및 원고의 대위변제

C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2020. 10. 21.경 창원 사업장을, 2020. 10. 28.경 대구 사업장을 각 폐업신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2. 1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J은행에게 신용보증원리금 합계 366,578,48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C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 595,62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1, 을 8호증의 1,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장이혼을 통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및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하는 부분은 202,134,686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50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M조합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297,865,31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증금채권 양도계약은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02,134,686원(= 202,134,686원 +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C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367,174,115원(= 대위 변제금 366,578,486원 +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 595,629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의 당시인 2020. 6. 8.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 ② C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적인 매출부진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의일로부터 4달여 뒤인 2020. 10. 21.경 창원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 10. 28.경 대구 사업장도 폐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의 당시 C의 재정상태는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 ③ 실제로 C가 2020. 10.경 창원 사업장과 대구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0. 12. 2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J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의 사후구상금 채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의 당시 C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9호증의 2, 갑 10~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의 당시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시가 127,134,686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020. 2. 87.5,000,000원, 2020. 8. 88.0,000,000원에 각 매매된 점, 위 2020. 2.에 매매된 아파트는 20층, 2020. 8.에 매매된 아파트는 7층에 각 위치하여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위 매매가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6. 기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에 위치한 같은 면적 아파트의 N 부동산 매물 시세 일반평균가는 845,000,000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85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M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2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95,730,628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가 소유한 1/2 지분의 시가는 127,134,686원[$(850,000,000\text{원} - 595,730,628\text{원}) \times 1/2$]이다.

② 대구 동구 O에 있는 P호(이하 'Q빌라'라고 한다): 시가 113,000,000원

Q빌라에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를 C로 하는 주식회사R, 유한회사 S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C의 소극재산으로 산입하였으므로 적극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보증금채권: 100,000,000원

④ 대구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

⑤ T 승용차: 시가 19,847,280원

같은 모델의 2019년식 중고차 시세 62,000,000원에서 U 주식회사가 위 승용차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2,152,720원(위 승용차의 할부금 잔액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19,847,280원($= 62,000,000\text{원} - 42,152,720\text{원}$)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⑥ 그랜드 스타렉스 3밴 냉동차: 시가 7,500,000원

그랜드 스타렉스 냉동차의 2012년식 중고차 시세는 10,000,000원으로 보이나, 피고는 그 시가를 이보다 낮은 7,500,000원으로 주장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시가를 7,500,000원으로 인정한다.

2) 소극재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다음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주식회사 V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30,830,335원도 C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갑 14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V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367,174,115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앞서 본 것처럼 C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J은행으로부터 합계 4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후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C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J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원고는 C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C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위 구상금 채무는 C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이므로 C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따로 C의 소극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② R에 대한 채무: 92,400,000원

앞서 본 것처럼 R은 Q빌라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C의 R에 대한 채무액으로 본다.

③ S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0,000,000원

앞서 본 것처럼 S는 Q빌라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C의 S에 대한 채무액으로 본다.

④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국세 채무: 39,913,620원

원고가 주장하는 C의 국세 채무 중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전에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6,012,000원, 6,004,500원, 15,484,120원, 12,413,000원만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소극재산에 산입한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은 합계 417,481,966원(= 127,134,686원 + 113,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19,847,280원 + 7,5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559,487,735원(= 367,174,115원 + 92,400,000원 + 60,000,000원 + 39,913,620원)으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보다 142,005,769원(= 559,487,735원 - 417,481,966원)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가장이혼 인정여부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거나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이가 과대한 재산분할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등 참조).

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

(1) 적극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7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조정이 성립한 2020. 6. 8.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와 C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와 C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시가 850,000,000원

피고와 C는 혼인한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인 2012. 5. 4.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② C 소유의 Q빌라: 시가 113,000,000원

C는 피고와 혼인하기 이전인 1998. 9. 4. Q빌라에 관하여 1998. 6.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C가 1999. 1. 21. Q빌라에 관하여 채권자 W조합에게 마쳐준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26. 말소되었는데, 그 전날인 2012. 9. 25. 피고의 J은행 계좌에서 C의 X조합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극적으로 Q빌라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 소유의 Q빌라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③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Y 제1층 Z호(이하 'AA빌라'라고 한다): 146,600,000원

피고는 C와 혼인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08. 10. 1. AA빌라에 관하여 2008. 8.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혼인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단독 명의로 AA빌라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AA빌라를 취득하면서 채권자 AB 주식회사에게 AA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AA빌라 매수자금인

176,000,000원 중 대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21. R과 AA빌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6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R으로부터 새로이 대출을 받아 AB에게 마쳐주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1),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R에게 마쳐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므로, C도 AA빌라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 소유의 AA빌라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④ C의 이 사건 보증금 채권: 100,000,000원
- ⑤ C의 대구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
- ⑥ 피고의 대구 달서구 AC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
- ⑦ C의 T 승용차: 시가 19,847,280원
- ⑧ C의 그랜드 스타렉스 3번 냉동차: 시가 7,500,000원

(2) 소극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조정이 성립한 2020. 6. 8.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와 C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가 2015. 9. 16. R에게 Q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2,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차용한 채무, 피고가 2019. 10. 22. J은행에게 AA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차용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거나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입증 없으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① M조합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 595,730,628원

피고와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12. 5. 4. J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8. 7. 16. M조합에게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이 마쳐주면서 위 J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한 점, 피고가 M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C에게 수시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조합에 대한 피고의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② J은행에 대한 C의 대출금 채무: 390,000,000원

앞서 본 것처럼 C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J은행으로부터 합계 4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20. 12. 1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C의 J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합계 366,578,486원(= 대출원금 365,000,000원 + 이자 1,578,4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액은 110,000,000원, 보증금액은 99,000,000원인데 원고가 2020. 12. 16. 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대출원금은 90,000,000원이므로, C는 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11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20. 6. 8.

이전에2)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는 2020. 6. 8. 당시 J은행에 대하여

390,000,000원(= 410,000,000원 -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J은행에 대한 C의 위 대출금 채무는 창원 사업장, 대구 사업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피고도 용인하였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③ S에 대한 C의 물품대금채무: 60,000,000원

S에 대한 C의 물품대금채무는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피고도 용인하였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④ R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 260,400,000원

피고가 2015. 10. 21. R에게 AA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60,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차용한 금원 중 84,104,970원(= 30,000,000원 + 40,000,000원 + 14,104,970원)이 같은 날 C에게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R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 C의 순재산

위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C	적극 재산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425,000,000
Q빌라	113,000,000		
소극 자산	이 사건 보증금채권	100,000,000	
대구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50,000,000		
T 승용차	19,847,280		
스타렉스 미니밴	7,500,000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S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90,000,00060,000,000		
C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265,347,280		
피고	적극 재산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425,000,000
AA빌라	146,600,000		
대구 달서구 AC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		
소극 재산	M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595,730,628	
R에 대한 대출금 채무	260,400,000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234,530,629		
C, 피고의 순재산 합계	30,816,651		

나)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는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피고가 이혼 당시 만 10세였던 딸 K를 양육하기로 한 점, 피고도 C의 창원 사업장, 대구 사업장과 별도로 자영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해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피고의 어머니인 AD가 80,000,000원을 C에게 이체하여 일부 비용을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의 순재산 가액 중 50%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순재산은 합계 30,816,651원이고, 피고는 그 중 50%인 15,408,325원(= 30,816,651원 × 50%,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의 순재산이 -234,530,629원이므로, 그 차액인 249,938,954원[= 15,408,325원 - (-234,530,629원)]이 피고에게 분배될 상당한 재산 분할금이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따라 가액 127,134,686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85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95,730,628원) × 1/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1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이전받아 그 합계액은 227,134,686원(= 127,134,686원 + 100,000,000원)이다. 이는 피고에게 분배될 상당한 재산 분할금 249,938,954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거나 단순히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성호

판사강수희

판사유진홍

별지

1) 피고와 A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일은 2015. 10. 21.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은 2015. 10. 23.이다.

2) C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20,000,000원을 2020. 6. 8. 이후에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